

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

◆ 본 고는 최근 농림부가 마련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(SOP) 내용중 일부입니다. <편집자 주>◆

- 농림부 -

1. 유입경계상황 (중국, 러시아, 대만,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 발생시)

가. 농림부

-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시달
-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점검 및 홍보 강화
- 관련부처협의회 개최 및 협조요청
 -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의 중요성과 국내 유입 방지요령(행정자치부, 국정홍보처, 각 시·도)
 - 항공기·선박 등을 통한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(관세청)
 - 해안을 통한 밀수 단속 및 감시(해양경찰청)
 - 공항내 및 기내방송, 음식물쓰레기 소독처리 등(건교부)
 - 발생국 현지 대사관에 여행객의 발생농장 방문 자제 요청

나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- 검역강화 조치
 - 공항만 검역(불법 휴대 육류 반입검사 등) 강화

- 세관 및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로 밀반입 동물 및 축산물 강력 단속
- 여행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
 - 해외전염병 국제발생상황 및 국제검역정보 수집 강화
 - 구제역 예방약 비축 및 진단기법 확립
 - 유입우려지역(서·남해안) 및 휴전선 인접 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혈청검사
 - 중앙예찰협의회 강화
 - 일선 가축방역관과 대농민 교육 및 홍보
 - 도축검사시 유사병변 검색

다. 각 시·도

- 농림부 시달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시행
 - 구제역 긴급방역 행동지침 세부실행계획 점검
 -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신고 강화
 - 도내 양축가에 대한 방역대책 홍보강화
 - 도경찰청 및 해양경찰청, 세관 등에 협조체 제구축
 -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및 예찰업무 강화

라. 각 시·도 방역기관

- 농림부 시달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

시행

- 지역예찰업무 강화
- 수포성질병 검색강화
-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 및 역학조사 실시
- 양축농가 교육 및 홍보
- 도축검사시 유사병변검색
- 유입우려지역(서·남해안) 및 휴전선 인접 지역 사육가축 채혈, 혈청분리 및 검역원 송부

2. 의사환축발생상황 (구제역의사 환축 발생시)

가. 각 시·도 방역기관

- 의사환축발생신고 접수후 환축에 대한 역학조사 상황을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
- 가축방역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점검 실시
-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금지, 농장입구 소독조 설치, 의심축 및 동거축 이동금지, 축사 및 주변소독 등 조치
- 원유, 분뇨, 사료 반출금지, 차량 및 출입자 통제
-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상황, 출입자 현황파악 등 역학조사 실시

나. 각 시·도

- 의사환축 발생상황을 농림부장관 및 인근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(통보)
-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관계관 긴급 파견협조요청
-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및 현장통제본부(발생장소) 설치 준비
 - 현장조사, 방역통제, 방역실시, 행정지원조치 준비
 - 방역대 설정준비 및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의 가축사육현황 파악

- 지방경찰청·군부대에 이동제한, 불법유통단속 등 통제협조 요청
 - 이동제한 감시인력(경찰병력) 배치
-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명함

다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- 채취가검물에 대한 정밀진단실시 및 결과보고(가검물 접수 48시간)
 - 해외전염병전문가 현장파견,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
 - 최단시간내 차폐실험실로 가검물 송부
-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 설치·준비
- 역학조사, 정밀진단, 검역, 국제협력반 가동
- 검역강화 및 유관기관에 밀수단속 등 협조 요청

라. 농림부

-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설치준비
- 해당 시·도지사, 검역원장의 조치사항 파악 및 인접 시·도지사에게 조치사항 지시
 - 각 시·도에 구제역의사환축 발생여부 등 예찰실시 지시

3. 발생확인상황 (구제역 발생확인시)

가. 농림부

-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가동 및 검역원, 시·도 대책본부간 24시간 보고체계 구축
- 확산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
 - 방역인력동원계획, 예방약·소독약 공급계획 등 종합박멸대책 수립·시행
 -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·시행
 - 살처분·이동제한 등 구제역방역으로 인한

농가 지원대책 수립 · 시행

○ 국무회의 등에 발생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협조요청

- 국무총리실, 기획예산처, 재정경제부, 행정자치부, 해양수산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건설교통부, 국정홍보처, 경찰청,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된 사항 협조 요청



▲ 구제역 발생축의 살처분 및 매몰 모습 (CPX훈련)

○ 국제수역사무국(OIE) 및 관련국에 구제역 발생 통보 및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의뢰

-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OIE에 통보
-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출 검역 잠정 중단

- 검역원장에게 국제표준연구소에 시료를 송부하여 구제역 혈청형을 신속히 진단 · 보고 토록 지시

○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

- 구제역 발생 및 방역조치 관련 보도자료 배포
- 육류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 구제역의 인체 무해성 등 대국민 홍보

나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○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및 일일보고

체계 · 구축

○ 혈청형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실시 및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진단체계 구축

- 시료를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에 긴급송부하여 확인 진단 의뢰

○ 예방접종 세부계획 수립

- 예방약 도입 · 보관 · 운송방법 · 사용방법 등 결정

- 예방약 및 소독약품 추가소요추정 및 공급계획 수립

○ 발생원인, 유입 및 전파경로에 대한 정밀 조사

- 민간전문가와 생산자대표 등으로 역학조사위원회 구성

-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추적조사 실시

- 해외정보수집 강화 및 국내외 구제역 전문가 초청 공동조사

○ 수출입 검역강화조치

- 수출품의 반송대비 검역대책수립 · 시행

- 공항만 검역강화 및 해외여행객 홍보강화

○ 환축 살처분, 소각 · 매몰 등 방역기술 지원

-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 범위설정 및 위험 · 경계 · 관리지역 범위 설정시 기술 지원

- 위험 · 경계 · 관리지역의 혈청학적 모니터링

▼ 살처분 폐기 및 축사 · 사양 설비등의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.



실시

- 발생확산대비 양축농가 도축장, 유관기관·단체 홍보강화
 - 양축농가의 신고 및 방역요령 홍보
 - 도축시 구제역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요령 홍보

다. 각 시·도 및 방역기관

- ○○시·도 구제역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24시간 보고체계구축
 - 현장통제본부 구성·운영
 - 방역대설정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에 의한 방역실시
 - 발생농장 및 발생지내 감수성 동물 살처분·폐기 및 축사·사양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
 - 위험지역(반경 3km), 경계지역(3~10km)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,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
 - 불법이동·반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
 -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·설치류의 살처분 및 구서 실시
 - 방역지역 가축의 출하를 위한 도축·가공장 지정
 - 가축사육현황파악 등 방역지역내 정보수집
 - 검역원의 예방접종계획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
 - 공개업수의사, 비대본요원 등으로 예방접종 반구성
 - 예방접종가축 출하도축장 지정 및 도축장 운용요령을 시달
 - 발생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
 -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축이동상황
 - 발생일로부터 7일전까지의 관리인, 수의사, 인공수정사 등과의 접촉 여부
 - 방역대비 가축시장 폐쇄, 가축품평회 개최 취소
 - 지역방송망을 통한 대국민, 양축농가 홍보강화

- 임상증상 및 신고요령·방역요령 등

4. 발생확산상황 (초기발생 이외의 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경우)

가. 농림부

-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상설가동
- 구제역 방역대책 수정·보완
 - 예방접종 확대 여부결정 등
-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 수정·보완
-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
- 대국민, 양축농가 홍보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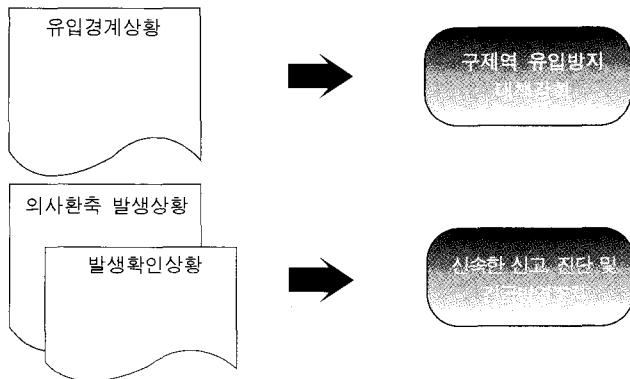
나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-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 확대운영
- 역학조사 강화 및 전파경로 추적분석
- 혈청검사 확대실시
- 필요한 예방약 긴급 도입 추진
- 수출입 검역강화·점검 철저
- 병원체 분리 및 병원체 특성조사
- 방송망 등을 통한 대국민, 양축농가대상 신고 및 방역요령 홍보강화

다. 각 시·도 및 방역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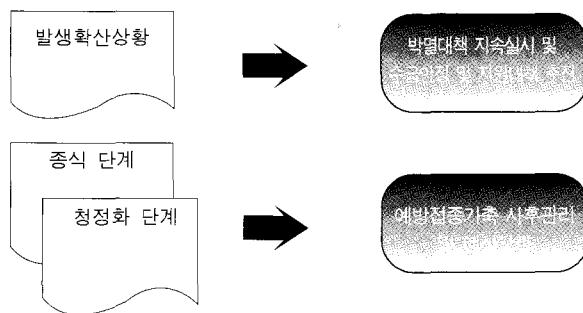
- ○○시·도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확대 운영
- 예방약접종 및 구제역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 살처분 실시
 - 불법이동, 반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사법조치
 - 각 지역별, 농장별,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수행 및 점검
 - 각 시·도별 확산 여부 정밀조사 및 방역조치
 - 혈청검사 확대 실시를 위한 채혈 및 임상관찰

〈그림1〉 구제역 발생 상황별 긴급조치 사항



한 혈청검사

- 방역지역 및 비발생지역의 혈청 모니터링 실시
 - 발생농장 시험 입식 가축의 혈청 검사 실시
 -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혈청 모니터링 검사 실시
- 재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강화 및 접검 철저
-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시행



다. 각 시·도 및 방역기관

- 시·도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운영
 - 위험·경계·관리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
 -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 실시
 - 예방접종 표시 및 관리대장 작성·유지
 - 예방접종 가축출하 지정 도축장 운영
 -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을 위한 시험입식 실시
 - 방역지역 및 비발생지역의 혈청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체혈
 -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시행

5. 종식단계 (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)

가. 농림부

-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운영
- 위험·경계·관리지역 사육가축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 결정
- 예방접종 중단 선언 및 사후관리지침 시달
- 재유입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달

나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-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
- 위험·경계·관리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

6. 청정화단계

가. 농림부

- 구제역 청정국가 선언 및 국제수역사무국에 청정국가 인정 요청 양동

